

##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서

2023년 6월 30일

위탁자 :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

수탁자 1 : 히어로손해사정 주식회사

수탁자 2 : 리카온손해사정

##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서

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(이하 "위탁자"라 하며, 특수피해물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 이다)와 히어로손해사정주식회사(이하 "수탁자1"이라 하며, "수탁자2"에 대한 관리 및 "위탁자"의 업무를 지원하는 "수행자"이다)는 \_\_\_\_\_ 리카온손해사정 \_\_\_\_\_ 이하 "수탁자2"라 하며, 특수피해물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다) "수탁자1"과 수탁자2" 를 통칭하여 "수탁자"라 한다. "위탁자"와 "수탁자"를 총칭하여 "당사자들"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특수피해물 자동차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(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 【목적】

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동차 보험사고 특수피해물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 제2조 【용어의 정의】

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"보험목적"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를 말한다.
- ② "보험사고"라 함은 보험계약에서 고객에 대하여 위탁자의 책임을 구체화 시키는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.
- ③ "고객"이라 함은 위탁자의 보험가입자(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 등) 및 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.
- ④ "특수피해물"이라 함은 보험목적이 전기, 통신, 교통시설물, 수입이륜차 등

1092796 2023-08-29 16:42:28

피해물의 특성상, 해당 피해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피해물을 말하며, 나열한 예시에 한정되지 아니 한다.

⑤ "손해사정업무"라 함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고조사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,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포함 한다.

가.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및 원인의 조사

나. 보험목적의 현황 조사

다. 보험목적의 손해상황 조사

라. 보험목적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

마.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 여부 검토

바.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

사. 상기 가. 목 내지 바. 목에 대한 손해사정 보고서의 제출

**제3조 【계약기간 및 효력발생】**

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로 하며, 본 계약서의 당사자 모두가 기명날인 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 단,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 부터 별도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.

**제4조 【업무위탁 및 절차】**

"위탁자"는 고객이 보험약관 등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, "수탁자1"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"수탁자1"은 전신주, 가드레일 등 특수피해물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서면 또는 유선 등 전자방식을 포함하여 위탁자의 동의 받은 후

1092796 2023-08-29 16:42:28

"수탁자2"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.(단, "위탁자"의 신속한 사고처리 및 손해확대 방지를 위해 전신주, 가드레일 등 특수피해물에 대해서 "수탁자2"에게 선 위탁 후, "위탁자"에게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다)

### 제5조 【위탁자의 의무】

"위탁자"는 제6조 1항에 따라 청구된 손해사정보고서 및 손해사정수수료 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8조에 따라 "수탁자2"에게 손해사정수수료가 지체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제6조 【수탁자1의 의무】

- ① "수탁자1"은 "수탁자2"가 제출한 손해사정보고서를 신속히 검토 후, 미비한 점이나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신속히 보험금과 손해사정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"위탁자"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- ② "수탁자1"은 "위탁자"가 정하는 선정·평가항목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"수탁자2"에 위탁하는 물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,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의 연장 또는 계약의 해지를 통해 업체들의 업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.

### 제7조 【수탁자2의 의무】

- ① "수탁자2"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업무 수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손해사정 업무를 완료하고,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"수탁자1"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"수탁자2"는 "수탁자1"로부터 손해사정보고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 받은 경우 정당한

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.

- ② "수탁자2"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민원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고,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③ "수탁자2"는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"수탁자1"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 또는 "수탁자2"가 직접 생성한 일체의 자료가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기록·관리·보존 하여야 하며, "수탁자1"로부터 해당 자료의 열람, 복사 및 반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른다.
- ④ "수탁자2"는 수탁업무의 처리 및 제2항에서 정한 자료의 기록·관리·보존을 위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"수탁자1"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"수탁자1"은 "수탁자2"에게 관리지침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"수탁자2"는 수탁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그 임직원들에게 고객 응대 방법 및 기타 "수탁자1"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 제8조 【보수의 지급방식 및 시기】

- ① "수탁자2"는 "위탁자"에게 위탁업무가 완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 내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, "수탁자1"은 청구내역의 오류 등을 확인하여 "위탁자"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"위탁자"는 "수탁자2" 명의의 계좌에 지급 한다
- ② 제1항의 보수의 산정은 별첨 손해사정 수수료 조건표에 따르며, 해당 수수료

조건표에 없는 사항은 양 당사자가 상호 서면으로 협의하여 정한다.

## 제9조 【계약의 해지】

- ①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서면 합의로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- ②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. 이러한 경우 본 계약은 서면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된다.
  - 가. 본 계약의 협조 내지 준수사항, 의무이행 등을 현저히 태만히 하여 상대방의 업무 수행 또는 그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- 나.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부정·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
  - 다. 그 주요재산에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거나, 그에 대해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, 또는 파산, 부도처리, 회사정리절차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계약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
  - 라.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
  - 마.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
  - 바. 일방이 제9조의 기밀 준수 및 개인(신용)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- 사. 수탁자의 임직원 중 손해사정업무 담당자의 1/3 이상이 일신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사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-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그 이전에 발생한 각 당사자의 권리 (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다)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#### 제10조 【면책】

- ① "위탁자" 또는 "수탁자"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당사자는 본 계약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② 제1항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함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천재지변 또는 법령의 개정, 폐지, 행정관청의 처분 등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의미한다.
- ③ 제2항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#### 제11조 【기밀 준수 및 고객 개인(신용)정보 보호 등】

- ①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존재 및 내용,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 당사자의 영업비밀, 상대방 소유의 재산(상호, 상표 및 저작물)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되며, 이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. 여기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

것으로서 각 당사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한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와 이에 준하는 정보를 의미한다.

②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고객의 개인(신용)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그들의 사용인, 대리인, 법률 및 회계자문에게 위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가. 본 계약의 양 당사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당사자가 모든 민,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.

나.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받은 정보, 자료, 문서 중에서 상대방 당사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것을 즉시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.

다. 본 조는 본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유효하다.

#### **제12조 【권리의무의 양도금지】**

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#### **제13조 【신의성실의 원칙】**

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의 내용을 준수한다.

#### **제14조 【선정기준 및 평가】**



“수탁자1”은 “수탁자2”에 대하여 (붙임2) 세부평가 항목 기준에 따라 연간 실적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여 추후 업무 의뢰 비율에 반영할 수 있으며 “수탁자1”은 위탁자에게 세부평가 결과를 제공한다.

### 제15조 【손해배상】

본 계약의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고객 또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 당사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# 제16조 【보증보험】

“위탁자”는 “수탁자2”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 있는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“위탁자”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 5백만원(₩5,000,000)의 손해배상 보장 예탁증서를 “수탁자2”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### 제17조 【자료 제출 요구 및 실사】

- ① “위탁자”는 “수탁자”가 위탁 받은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“위탁자”는 제1항의 제출된 자료 및 소명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“수탁자”의 사업장에 대한 직접 실사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“수탁자”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한 “위탁자”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정당 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.

### 제18조 【서면통지 등의 주소】

본 계약상의 모든 통지, 보고 등은 서면에 의하며, 상대방에게 다음의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계약상의 통지는 인편으로 교부될 경우에는 그 교부일에,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발송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, 전자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전자메일에 대한 적절한 확인이 있는 경우 발송한 때에 각 수령된 것으로 본다.

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앞

주 소 : 서울 중구 소월로 3(남창동,롯데손해보험빌딩)

자동차보상관리팀

전화번호 : 1588-3344

전자메일 :

담당자 :

히어로손해사정 주식회사 앞

주 소 :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와이즈타워 19층

자동차보상지원팀

전화번호 : 1833-2221

전자메일 :

담당자 :

**제19조 【계약의 해석 등】**

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 하여

결정하기로 하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.

수탁자는 본 계약내용의 이행이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행됨을 보증한다.

### 제20조 【관할법원】

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,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별 첨 : 손해사정 수수료 조건표 1부

세부평가항목기준 1부.

상기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 부를 작성하며,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자 1 부씩 보관한다.

관리팀 1692288 2023-09-29 14:49:26

2023 년 월 일

“위탁자” :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

서울 중구 소월로 3(남창동,롯데손해보험빌딩)

대표이사 이 은 호 (인)



“수탁자1” : 히어로손해사정 주식회사

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와이즈타워 19층

대표이사 이 은 (인)



“수탁자2” : 리카온손해사정

서울 금천구 가산동 호서대 벤처타워 807호

대표자 : 유 상 헌 (인)



관리팀 1692288 2023-09-29

### 수수료 조건표

항 목	손해사정금액	요율	기준액(원)	비고
자전거 및 이륜차 원동 기 장치 장착 기계류	300만원 이하	고정	170,000	손해사정액 1.직접손해액기준 (간접손해 제외) 2.과실상계전금액
	300만원초과~500만원이하	고정	250,000	
	500만원초과~1,000만원이하	고정	350,000	
	1,000만원초과~2,000만원이하	고정	500,000	
	2,000만원초과~3,000만원이하	3.74%		
	3,000만원 초과		별도협의	
특수피해물 (특장 및 화 물 자동차 포 함)	300만원이하	고정	300,000	
	300만원초과~600만원이하	고정	400,000	
	600만원초과~1,000만원이하	고정	500,000	
	1,000만원초과~2,000만원이하	5.06%	1,012,000	
	2000만원초과~3,000만원이하	4.18%	1,254,000	
	3,000만원초과~5,000만원이하	3.74%	1,870,000	
	5,000만원초과~1억원이하	2.88%	2,820,000	
	1억원 초과	2.20%	별도협의	
소건서 제출 : 제품정보 및 시세, 복원 예상비용, 기간 등에 대한 소건 제시 (최하 100,000원~ 최고 300,000원내 별도협의)				

- ◆ 1. 자전거, 특수피해물 수수료 지급 기준은 손해사정액 기준으로 산정
- 2. 위장사고 적발건은 금액 및 난이도 감안 별도 협의 후 지급한다.
- ◆ 교통비
  - 1. 업무용 승용차 : 유류대 및 통행료 (네이버지도기준 왕복 실비)
  - 2. 항공:이코노미 철도: ktx,srt일반실 선박:일반실 버스및기타교통수단:실비
  - 3. 위탁 손해사정 법인의 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(시단위)은 일비만 지급
- ◆ 일비(식비포함) : 30,000원
- ◆ 숙박비(1일당) : 50,000원(1일기준 출장편도 200km이상시)

## 위탁 손해사정업체 세부 평가 항목

구분	배점	평가방법
초동조사 신속도	20	초동조사 및 손해조사 등 사고조사 신속도에 대한 평가
진행사항 중간보고	15	수입 후, 피해자 및 의뢰인에게 업무 진행사항 등 고객서비스에 대한 평가
손해사정 전문성	25	피해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
보고서품질	20	손해액 산정 근거, 입증자료 등 보고서 완성도에 대한 평가
고객서비스	20	민원 및 분쟁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능력
VOC불만	감점	유선불만, VOC불만접수, 대외민원 접수

## 1. 초동조사 신속도

- Survey 의뢰 건 처리과정에 대한 신속도 및 협조도 평가
-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.

## 2. 진행사항 중간 보고

- 예상 손해액 및 처리과정에 대한 신속 및 정확도 평가

## 3. 손해사정 전문성

- 피해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

## 4. 보고서 품질

- Survey 보고서 품질 평가
- 손해사정근거 및 입증자료 충실도 평가
- 손해사정서의 중요한 내용 고지 여부.

## 5. 고객서비스

- 민원 및 분쟁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능력

## 6. VOC불만(감점)

- 유선 불만, VOC불만 접수, 대외민원 접수

※ 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을 계약기간 중에 변경 또는 조정 될수 있음.

##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

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(이하 "롯데손보" 라 하며, 특수피해물에 대하여 보험금을 부담하는 위탁사 이다)와 히어로손해사정 주식회사(이하 "히어로손사"라 하며, 수탁사에 대한 관리 및 업무를 지원하는 "수행자"이다)

\_\_\_\_\_ (이하 "수탁사"라 하며)는 20 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서(이하 "본 계약"이라 한다)를 체결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"위탁사"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"수탁사"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(이하 "본 위탁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 (목적)

본 위탁계약은 "위탁사"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"수탁사"에게 위탁하고, "수탁사"는 이를 승낙하여 "수탁사"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용어의 정의)

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본 계약, 개인정보보호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)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.

### 제3조 (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)

"수탁사"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.

-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및 원인의 조사
- 보험목적의 현황조사
- 보험목적의 손해상황 조사
- 보험목적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

- 5.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 여부 검토
- 6. 상기 1호 내지 5호에 대한 손해사정보고서의 제출

#### 제4조 (재위탁 제한)

- ① "수탁사"는 "위탁사"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"위탁사"와의 본 위탁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.
- ② "수탁사"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"수탁사"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"위탁사"에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제5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"수탁사"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,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-43호)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·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# 제6조 (개인정보의 처리제한)

- ① "수탁사"는 본 위탁계약 기간은 물론 본 위탁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② "수탁사"는 본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보호법」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"위탁사"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"수탁사"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"위탁사"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제7조 (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 등)

- ① "위탁사"는 "수탁사"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"수탁사"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

1.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
2.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
3.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
4. 목적외 이용·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
5.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
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② "위탁사"는 "수탁사"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수탁사"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
- ③ "위탁사"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( 1 )회 "수탁사"를 교육할 수 있으며, "수탁사"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"위탁사"는 "수탁사"와 협의하여 시행한다.

#### **제8조 (손해배상)**


"수탁사" 또는 "수탁사"의 임직원 기타 "수탁사"의 수탁자가 본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"수탁사" 또는 "수탁사"의 임직원 기타 "수탁사"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"위탁사"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"수탁사"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"위탁사"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"위탁사"는 이를 "수탁사"에게 구상할 수 있다.

본 위탁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, "위탁사"와 "수탁사"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당사자 "위탁사" :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 
서울 중구 소월로 3 (남창동,롯데손해보험빌딩)  
대표이사 이 은 호 (인)

히어로손해사정 주식회사  
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와이즈타워 19 층  
대표이사 이 은 (인)

당사자 "수탁사" : **106-86-30223**  
리카온과제대상 유상현  
자동차손해사정(주)   
서울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로  
호서대벤처타워 807호  
서비스 손해사정



저희 **우리은행**은 커진 만큼 큰 보답을 드리겠습니다

**리카운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 (주) 님**

계좌번호 **016-285800-13-101**

예금과목 **기업자유예금(우리뱅크통장)**

실명확인필04-08-05(이월-0)



대한민국정부  
인 지 세  
100원  
납대문서무서장  
17년음은 2012년 06월 28일



인감사용

신계좌번호 **1005-500-014287**

신고객번호 **025093119**

내좌관리점 **가산벤처지점**

개입일자 **2004-08-05**

전화 **02- 839-9176**

충청지방점 **동차동지점**

발행일자 **2012-06-28**

전화 **02- 754-4491**

(이 통장은 본 도장을 함하여 12년음은...)

종료증서 (1037)

계좌카드 E카드 인터넷 PC뱅킹 자동이체 인감카드  
**N Y N Y 76 0**

통장일련번호 **166**

**약관적용 안내**

▶ 이 통장의 거래에는 예금거래기본약관, 신탁거래약관 및 해당 예금 개별약관을 적용하며, 우리 은행에 비치된 약관내용을 열람 또는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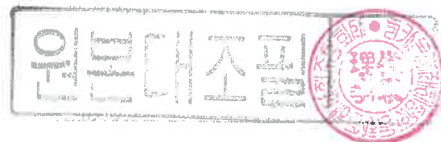
**이용 안내**

- ▶ 가계무대적금 등 특별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은 대출을 받거나 차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종금상장 금액에 대하여 해당일수 만일 특별금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▶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누설될 경우 예금이 부정 인출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.
- ▶ 통장 인감, 현금카드, IC카드,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는 바로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신고하여 주십시오.
- ▶ 신고된 서명만으로 예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예금주가 본인의 주민등록증용구 사형셔야 합니다.

통장, 현금카드, IC카드 분실신고 : 1599-5000, \*588-5000  
신용(BC) 체크카드 분실신고 : 1588-9055

텔레뱅킹/고객상담 : ☎ 1599-5000, 1588-5000(해외에서 이용시 82-2-2006-5000)

「고객의 소리」접수 : ☎ 080-365-5000(핸드폰이용시 ☎ 02-2008-5000)





# 사업자등록증

( 면세법인사업자 )

등록번호 : 106-86-30223

법인명 (단체명) :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 (주)  
대표자 : 유상헌

개업연월일 : 2004년 09월 01일      법인등록번호 : 110111-3054155

사업장소재지 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, 806, 807호(가산동, 호서대벤처타워)

본점소재지 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, 806, 807호(가산동, 호서대벤처타워)

사업의종류 : 업태 서비스      종목 손해사정



발급사유 : 정정

이메일주소: 7579551@recaon.com

전화번호: TEL 02-757-955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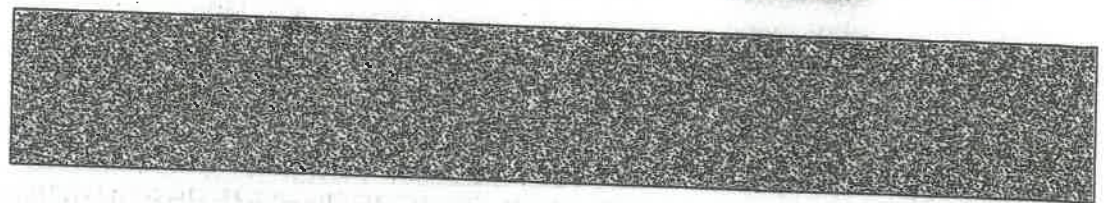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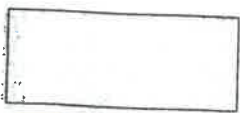
최인영

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: 여( ) 부(✓)

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:

2017년 08월 02일

금천세무서장



제 B0000167 호

# 손해사정업등록증

상 호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  
대 표 자 유상헌  
주민등록번호 630426-1\*\*\*\*\*  
소 재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1로 70  
806, 807호(가산동 대벤처타워)  
영 위 종 목 1종 3종대리 3종대리  
인 격 인  
최초등록일자

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-12조제1항의 규  
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2017년 7월 26



금융감독원





# 손해배상보장 예탁증서

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(주)  
(등록번호 : B0000167 , 대표자 : 유상현 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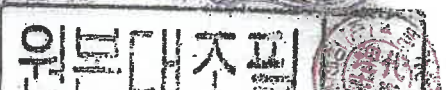
일 금 : ₩5,000,000  
종 류 : 인허가보증보험증권  
보험기간 : 2019.08.05  
~ 2023.06.30

위 금액을 보험업법 제191조, 보험업감독규정 제9-11조  
의2 제2항 및 제9-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장을  
위하여 예탁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.

2019년 4월 22일



금융감독원



## 인허가보증보험증권

증권번호 제 100-000-2023 0253 4149 호

### 기본사항

보험계약자	106-86-30223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(주) 유상현	피보험자	116-82-14464 금융감독원
보험가입금액	금 五百萬 원整 ₩5,000,000-	보험료	₩15,000- ■ 일시납 □ 분납
보험기간	2023년 07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(1,096 일간)		

### 보증하는 사항

보증내용	손해사정업(보험계리업) 등록보증금 보증
특별약관	1.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특기사항	
주계약내용	[행정행위내용] 인허가종류 손해사정업(보험계리업) 등록 인허가조건 보험업법 제191조 인허가기간 2023년 07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소재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806호 807호 (가산동, 호서대벤처타워) 인허가번호 인허가보증금액 ₩5,000,000-

### 알아두셔야 할 사항

1. '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'이 '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'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.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,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(www.sgic.c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3. 회사가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.

우리 회사는 인허가보증보험 보통약관,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인허가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.  
본 증권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.

증권 발급	대리점	대리점명	화신
		모집자 고유번호	유우신 20021074100007 (02-2633-0092)
	지점	구로디지털지점	02-846-0021
		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10층 (구로동, 지밸리비즈플라자)	

2023년 06월 13일

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

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(연지동, 보증보험빌딩)

대표이사  
장

유상현



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200원  
증로세 무서장  
인쇄 승인 제2003-1호

SGI was rated "A+(stable)"  
by S&P Global Ratings

"AA (Stable)"  
Fitch Ratings



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 
산업통상자원부  
(사)한국서비스진흥협회

ISO 37301  
ISO 37001

준법경영시스템  
부패방지경영시스템  
한국경영인협회 인증기업

# 보험증권

## 업무배상책임보험

계약번호 : 82300025026000

계약자	(주)리카온손해사정 (08590)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*****	계약자번호	106-86-30223
피보험자	(주)리카온손해사정	피보험자번호	106-86-30223
보험기간	2023.01.08 24:00부터 2024.01.08 24:00까지	청약일	2022.12.28
첫회보험료	2,744,000 원 (1회/일시납)	총보험료	2,744,000 원

### 가입내역

목적물	목적물명	전문인배상		
	소재지	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806,807호 (가산동,호서대벤처타워)		
	매출액	903,064,913	소급담보일자	2014-01-08
	가입업무	손해사정	종업원수	13
	전문직종사자수	15	담보지역코드	대한민국
	재판관할법원명	대한민국	통지연장기간구분코드	없음
	손해발생구분코드	없음		

보장조건	화폐	보장/공제금액	보험료
손해사정사 특별약관 ( ProfessionalIndemnity 사고당 보상한도 )	KRW	300,000,000	2,744,000
손해사정사 특별약관 ( ProfessionalIndemnity 총보상한도 )	KRW	300,000,000	
손해사정사 특별약관 ( 사고당 공제금액(%) )	KRW	0.00	
손해사정사 특별약관 ( 사고당 공제금액 )	KRW	1천만	
<b>보험료합계</b>			<b>2,744,000 원</b>

### 기타사항

전문직종구분코드	손해사정사	갱신계약여부	예
전계약번호	82210077298000	정산대상코드	아니오
납입주기	일시납	다른보험가입여부	아니오
단체계약유형코드	1종단체(급여단체)	연간구간구분	연간계약
단체(성)보험계약여부	아니오	피보험자관계	본인
별첨서류여부	아니오	최초공시여부	아니오
변경공시여부	아니오		

우리는 보험계약자와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여  
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보험증권을 드립니다.

이 보험증권은 2022년 12월 28일 수도권법인4지점에서 발급하였습니다.  
이 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##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

대표이사 **洪元學**  
사 장



## 삼성화재

대한민국정부  
인지세:100원  
서초세무서장  
후 납윤인  
2016년 34017호

삼성화재 수도권법인4지점보험대리점 주식회사 삼성화재모닝인슈 [ 협회등록번호: 20120161090001 ]

Tel : 02-389-7291/010-4331-3372  
mail : cjh7290@samsungfire.com



## 보험증권

### 업무배상책임보험

계약번호 : 82300025026000

계약자 (주)리카온손해사정  
(08590)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\*\*\*\*\*  
피보험자 (주)리카온손해사정  
보험기간 2023.01.08 24:00부터  
2024.01.08 24:00까지  
첫회보험료 2,744,000 원 (1회 /일시납)

계약자번호 106-86-30223  
피보험자번호 106-86-30223  
청약일 2022.12.28  
총보험료 2,744,000 원

#### ④ 사용된약관

- \*업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
- \*손해사경사 특별약관
- \*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
- \*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특별약관
- \*정보기술 추가약관 (사이버위험 보상제외 추가약관)
- \*제재위반 보상제외 특별약관
- \*감염병 부담보 특별약관 (LMA 5399)

#### ⑤ 계약관련자

계약관련자	계약관련자번호	계약관련자명
피보험자	106-86-30223	(주)리카온손해사정

- \* 보험증권은 계약체결의 증거로 발행되는 것이며, 실제 계약내용은 계약청약서 및 보험약관을 따릅니다.
- \*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- \* 본 보험증권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회사 소정의 납입영수증이 발급되어야만 유효합니다.

우리회사는 보험계약자와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여  
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보험증권을 드립니다.

이 보험증권은 2022년12월28일 수도권법인4지점에서 발급하였습니다.  
이 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##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

대표이사 홍 원 수  
사 장



## 삼성화재

대한민국정부  
인자세100원  
서초사무서장  
후 납 승인  
2016년 34017호

삼성화재 수도권법인4지점보험대리점 주식회사 삼성화재모닝인슈 [ 협회등록번호: 20120161090001 ]

Tel : 02-389-7291/010-4331-3372  
mail : cjh7290@samsungfire.com